

영업업무 위탁점 계약서

SK 텔레콤 주식회사 (이하 " 회사 " 라 한다) 와 동성텔레콤 (이하 " 대리점 " 이라 한다) 는 " 대리점 " 이 고객의 가입 유치 , 개통업무 등 " 회사 " 의 영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권리 , 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호 및 소재지) " 대리점 " 의 상호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.

- ① 상호 : 동성텔레콤주식회사
- ② 주소 : (07217)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, E동 1층 110호(당산동4가,당산SKV1CENTER)

제 2 조 (관계규정 준수 등)

" 대리점 " 은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된 법령과 이용약관 및 " 회사 " 의 영업업무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.

제 3 조 (이용약관 등 게시)

- ① " 대리점 " 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.
- ② " 대리점 " 은 업무의 종류와 영업시간 등에 관한 안내사항도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.

제 2 장 영업업무 운영

제 4 조 (업무의 범위)

- ① " 회사 " 가 " 대리점 " 에게 위탁하는 영업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다 .
- ② " 회사 " 와 " 대리점 " 간 상품의 납품방법 ,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과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은 계약 성격상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다

제 5 조 (업무의 수행)

“ 대리점 ”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“ 대리점 ” 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.

제 6 조 (영업점포 개설 등)

- ① “ 대리점 ” 이 제 1 조 제 2 항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영업점포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기 개설된 영업점포의 이전 , 폐쇄 , 양도 , 변경 시에는 “ 회사 ” 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.
- ② “ 회사 ” 는 “ 대리점 ” 의 업무활성화 등을 위하여 영업점포 등에 자산 혹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,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“ 대리점 ” 과의 별도 약정에 따른다 .
- ③ “ 대리점 ” 은 영업점포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, 관리 , 감독하여야 하고 영업점포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“ 회사 ” 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.
- ④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에 의하여 “ 대리점 ” 이 “ 동종사업자 ” 혹은 “ 동종사업자 ” 의 업무위탁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경우 , “ 회사 ” 는 고객정보 혼재 , “ 동종사업자 ” 로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“ 대리점 ” 의 영업점포의 분리 , 변경 또는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, “ 대리점 ”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.

제 7 조 (인감신고)

- ① “ 대리점 ” 은 “ 회사 ” 와 거래함에 있어서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, 신고한 인감을 변경한 경우 즉시 “ 회사 ” 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.
- ② “ 대리점 ” 은 제 1 항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반 손실 및 책임을 부담한다 .

제 8 조 (현금 등의 구분 계리)

“ 대리점 ” 은 “ 회사 ” 의 업무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.

제 9 조 (이동전화 개통 등 과정에서 수납하는 금액의 회사납입)

- ① “ 대리점 ” 은 이동전화 개통 등의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납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“ 회사 ” 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.
- ② “ 대리점 ” 이 제 1 항의 금액을 제 1 항의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“ 회사 ” 는 전산 온라인을 통하여 “ 대리점 ” 에 미납사실 및 미납금의 총액을 통보한다 .

③ " 대리점 " 이 수납금의 납입을 지연한 경우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에게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.

제 10 조 (영업업무의보고)

- ①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에게 본 계약에따른 " 대리점 " 의 영업업무의 보고 및 영업업무에 관한 자료 (영업업무에 대한 " 대리점 " 의회계장부 , 통장사본 , 거래내역 등) 를 요구할 수 있고 , " 대리점 "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.
- ② " 대리점 "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이를 " 회사 "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.
1. " 대리점 " 의 회사 대표자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의 변경
 2. " 대리점 " 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
 3. " 대리점 " 의 자본금의 변동
 4. " 대리점 " 의 주식이동 또는 지분 변동
- ③ " 대리점 " 의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사항에 대한 보고태만 또는 지연으로 발생한 " 회사 " 의 손해에 대해서는 " 대리점 " 이 배상하여야 하며 , " 대리점 " 은 보고태만 또는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" 회사 " 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.

제 11 조 (비밀의 보호)

- ① " 대리점 " 은 업무상 알게 된 " 회사 " 의 영업상 비밀 (판매정책 (단가) , 복지 프로그램이나 각종 매뉴얼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와 그 내용은 그 서류의 제목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함 . 이하 같음) 및 가입고객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,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이와 같다 .
- ② " 대리점 " 은 제 1 항 위반으로 인하여 " 회사 " 또는 " 회사 " 의 가입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.

제 12 조 (고객정보 보호의무)

- ① " 대리점 " 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, 고객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고객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.
- ② " 대리점 " 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고객정보 침해방지 약정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, " 회사 " 는 필요 시 " 대리점 " 을 방문하여 관리방안 ' 의 고객정보 침해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.

- ③ " 대리점 " 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의하여 고객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· 감독하여야 하고 , 해당 직원의 고객정보 침해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.
- ④ " 대리점 " 은 업무를 판매점 등의 제 3 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에도 제 3 항과 동일한 관리 · 감독 및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.
- ⑤ " 대리점 " 은 본 조의 고객정보 보호의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.
- ⑥ " 대리점 " 은 제 1 항 내지 제 5 항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민 형사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한다 . 단 , 회사의 면책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.

제 13 조 (동종사업의 계약체결)

①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, 수탁자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· 감독하여야 함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, 본 계약에 따른 영업위탁 과정에서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의 고객정보를 수탁받아 수집하며 ,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포함된 서면 , 전화 , 이메일 등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 , 회사가 " 대리점 " 의 업무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자산 및 시설들은 오로지 회사의 영업위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,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(이하 " 동종사업자 " 라 한다) 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거나 혹은 동종사업자의 업무위탁자로부터 그 업무를 다시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정보보호와 영업상 비밀보호 및 " 회사 " 가 지원한 자산의 보호방법을 보강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한다 .

1. " 대리점 " 은 " 동종사업자 " 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거나 혹은 동종사업자의 업무위탁자로부터 그 업무를 다시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i) 동종사업자로부터 업무위탁 등을 받고자 하는 사실 , ii) 업무상 알게 된 비밀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구체적 계획 , iii) " 회사 " 로 부터 지원받은 자산 및 시설 보호방안에 관한 계획을 " 회사 " 에게 사전에 서면 (이하 " 계획서 " 라 한다)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.

2. " 회사 " 는 제 1 호에 따른 " 계획서 " 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" 대리점 " 의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적인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" 대리점 "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. " 회사 " 는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" 대리점 " 에게 제 1 호에 따른 " 계획서 " 를 수정 혹은 구체화하여 제출 (이하 " 수정계획서 " 라 한다)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.

3. " 회사 " 는 제 2 호에 따라 확정된 " 계획서 " 의 내용을 " 대리점 " 과의 업무관련 기존약정들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, " 대리점 " 은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. 또한 , 회사는 확정된 " 계획서 " 의 내용이 외에도 " 대리점 " 의 동종사업자 등과의 계약으로 기존 약정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, " 대리점 " 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.

4. " 회사 " 는 제 2 호의 " 수정계획서 " 의 내용만으로는 " 회사 " 의업무상 비밀보호 , 고객정보보호 , 그 외 회사자산 보존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" 회사 " 는 직접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.

② 대리점이 제 1 항을위반하거나 제 1 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동종사업자 혹은 그의 업무위탁자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경우 , 회사는 제 1 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, 대리점은 15 일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. 대리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, 회사는 제 30 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.

③ " 동종사업자 " 혹은 그의 업무위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명이가 누구로 되어있는 지를 불문하고 , 실제운영자가 " 대리점 " 인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.

제 14 조 (기 체결된 계약에 대한 고지)

① " 회사 " 는 본 계약 체결당시 회사의 업무상 비밀의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, 회사가 " 대리점 " 에 지원하게 될 자산 및 시설 보호 등을 위하여 " 대리점 " 이 " 동종사업자 " 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거나 혹은 동종사업자의 업무위탁자로부터 다시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.

② " 대리점 " 이 " 동종사업자 " 혹은 " 동종사업자 " 의 업무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" 대리점 " 은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, 제출 계획서의 수정 , 관련 계약서의 변경 등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제 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.

③ 제 1 항에 따른 합의에도 불구하고 " 대리점 " 이 제 1 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" 회사 " 는 제 30 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.

④ " 동종사업자 " 혹은 그의 업무위탁자와 체결되어 있는 계약의 명이가 누구로 되어있는 지를 불문하고 , 실제운영자가 " 대리점 " 인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.

제 15 조 (교육)

① " 대리점 " 은 영업업무의 수행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영업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자신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.

② " 회사 " 는 제 1 항의 직무교육과 관련 " 대리점 " 이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.

1. " 회사 " 의 상품 , 서비스 , 이용약관 기타 제규정에 관한 정보
2. 직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의 제공
3.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
4.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" 대리점 " 과의 교육비 정산 등 업무의 대행
5. 기타 제 1 호내지 제 4 호와 관련 " 대리점 " 이 요청하는 사항

③ " 회사 " 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.

제 3 장 대리점 수수료

제 16 조 (대리점 수수료)

① " 회사 " 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도의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" 대리점 " 에게 지급한다 .

1. 가입고객 관리수수료
2. 기타 수수료

② " 대리점 " 이 업무 수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제 9 조 제 1 항의 납입 기한 내에 " 회사 " 에게 납입하지 않은 경우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에게 지급할 제 1 항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.

③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이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, 이용약관 , 위탁계약서 및 영업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 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.

제 4 장 시설 및 장비

제 17 조 (시설 및 물품의 대여 또는 지원)

① " 회사 " 가 " 대리점 " 의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 약정서에 의거 " 대리점 " 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은 " 회사 " 또는 " 회사 " 가 지정한 자의 소유이며 " 대리점 " 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.

② " 대리점 " 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을 임의로 착탈 · 변경 · 이동 할 수 없으며 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유지 , 관리하여야 한다 .

③ " 대리점 " 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분실 , 도난 , 멸실 , 훼손 또는지원 및 대여에 관한 별도 약정 위반시 " 회사 "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.

- ④ " 대리점 " 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" 회사 " 로 부터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, 사용 기간 중 " 회사 " 또는 " 회사 " 가 지정한 자의 관리상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.
- ⑤ " 회사 " 는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서에 따라 " 대리점 " 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.
- ⑥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의 요청에 따라 " 대리점 " 이 지정하는 직영점이나 판매점에 대하여도 시설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, 이 경우 해당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" 대리점 " 은 본 조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.

제 18 조 (시설기준)

- ① " 대리점 " 의 영업장 면적 및 내부시설은 " 회사 "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, " 회사 " 가 업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" 대리점 " 으로 하여금 시설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.
- ② 제 1 항의시설에 따른 비용은 " 대리점 " 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, 필요시 " 회사 " 가 시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.

제 19 조 (간판부착)

- ①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가 지정하는 위치에 " 회사 " 가 정한 규격의 간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, " 대리점 " 의 직영점에 대해서는 " 회사 " 에게 요청하여 " 회사 " 가 지정하는 위치에 " 회사 " 가 정한 규격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.
- ② " 대리점 " 은 " 대리점 " 의 비용으로 제 1 항의 간판을 유지·보수 하여야 하며 , 간판부착 이후 발생하는 인적·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" 대리점 " 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.
- ③ " 대리점 " 은 본 계약기간 동안에는 " 회사 " 의 사전 승인 없이 간판을 철거하거나 간판내용을 변경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된다 .

제 5 장 계약변경 및 업무지도

제 20 조 (영업장변경)

" 대리점 " 이 현재의 영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" 회사 "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.

제 21 조 (권리양도 금지 및 명의변경)

- ①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서 상의 권리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, 대여 , 위임하거나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.

② " 대리점 "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" 회사 " 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채권채무 승계 및 담보유지에 관한 조치를 " 회사 " 가 정하는 절차에 의거 변경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.

1. 계약인의 명의 변경
2.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
3.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의 전환

제 22 조 (지도 , 점검 및 조사)

- ①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의 업무 수행 및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, 점검하고 필요시 업무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.
- ② 제 1 항의 경우 " 회사 " 는 장부와 관련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" 대리점 "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" 대리점 "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.

제 23 조 (신용조사)

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의 업무 수행 및 본 계약 이행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" 대리점 " 의 영업현황 ,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할 수 있으며 , " 대리점 "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.

제 24 조 (대리점지원 등)

- ①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.
- ②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의 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, 지급 방법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.

제 25 조 (지원자산 회수)

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에게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자원의 공정한 배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회수 및 재배치 할 수 있다

제 26 조 (시정요청 및 경고조치)

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이 본 계약사항 및 " 회사 " 의 영업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청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.

제 6 장 광고

제 27 조 (문서 등의 작성 배포)

" 대리점 " 은 " 회사 " 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" 회사 " 의 영업에 관한 광고 , 문서 및 도화의 간행과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.

제 28 조 (회사의 상호 , 상표 , 마크 등의 사용)

- ①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가 사전에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" 회사 " 의 상호 , 상표 ,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,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시 " 회사 " 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.
- ② " 대리점 " 은 제 1 조 제 1 항의 대리점명칭을 영업업무 이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.
- ③ " 대리점 " 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위반으로 발생된 " 회사 " 의 유 ·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.

제 7 장 보 칙

제 29 조 (담보제공 등)

- ① " 대리점 " 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개별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" 회사 " 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일까지 " 회사 " 가 정하는 금액의 담보를 " 회사 "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.
- ②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의 신용악화 , 담보가치의 감소 등으로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" 대리점 " 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,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가 요청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 .
- ③ 제 1 항의 담보는 은행지급보증서 등 " 회사 " 가 정하는 종류의 담보로 한다 .
- ④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" 회사 " 가 부담 하고 , 담보의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" 대리점 " 이 부담한다 .
- ⑤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에 대한 채무를불이행 하거나 본 계약 및 개별 약정을 위반하여 " 회사 "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, " 회사 " 는 제 1 항의 담보를 실행 또는 처분하여 " 대리점 " 의 " 회사 " 에 대한 모든채무 , 이자 ,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.

제 30 조 (계약해지 등)

- ① " 회사 " 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.
 1. " 대리점 " 또는 " 대리점 " 의 실경영자가 은행거래를 정지 당한 때
 2. " 대리점 " 이 파산 신청 , 회생절차 개시 ,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
 3. " 대리점 " 이 압류 , ,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은 때

4.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의 업무처리규정을위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증액 시키거나 , 기타 " 회사 " 에 납입해야 할 수납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
 5. " 대리점 " 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소 · 고발이나 형사상 소추를 당하여 " 회사 " 와의 계속적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 6. " 대리점 " 이 제 2 항의 업무 정지 또는 계약해지의 최고를 받고 " 회사 " 의 시정요구를 이행한 후 ,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
- ② " 회사 " 는 다음 각호의 경우 30 일간의 기간을 두고 " 대리점 " 에 대하여 그 시정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.
1. 3 개월 연속하여 또는 6 개월간의 신규매출이나 신규판매 평균실적이 " 회사 " 가 정한 일정수준 미만으로 영업활동 이 극히 부진한 경우
 2. " 대리점 " 이 고객에게 가한 손해로 인하여 " 회사 " 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때
 3. " 대리점 " 이 신용평가기관에 악성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
 4. 영업장의 이전 , 폐쇄 , 양도 , 축소 또는 상시근무인원의 축소 등으로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운 경우
 5.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와의 거래관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한때
 6. " 대리점 " 이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된 개별약정 또는 " 회사 " 의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
 7.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의 가입고객을 경쟁사업자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8. " 대리점 " 이 제 11 조 내지 제 14 조 등 본 계약 규정을 위반한 때 .
 9. " 대리점 " 이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
 10. " 대리점 " 이 " 회사 " 의 사전 동의없이 휴업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사한 고객불만건이 월 10 회 이상 발생하는 등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
 11. " 대리점 " 이 단독으로 또는 제 3 자 (" 회사 " 의 다른 대리점 포함) 와 함께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" 회사 " 의 사업을 제한 , 방해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 " 회사 " 와 " 대리점 " 간의 계속적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
 12. " 대리점 " 이 제 9 조 제 2 항에 의해 통보를 받은 후 10 일 내에 제 9 조 제 3 항의 금액을 " 회사 " 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③ " 회사 " 는 제 2 항의 각 호의 경우 제 2 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" 대리점 " 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 한 서면으로 6 개월의 범위 내에서 " 대리점 " 의 영업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, 7 일 이내 " 대리점 " 의 소명이 없을 때

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.

-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업무가 정지된 " 대리점 " 에게는 영업업무 정지기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.
- ⑤ " 대리점 " 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 개월 전에 " 회사 " 에게 다음 각 호를 기재한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.
 - 1.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사유
 - 2.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
- ⑥ " 회사 " 는 제 2 항의 최고기간 중에는 가입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온라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.
- ⑦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 약정상의 " 대리점 " 의 " 회사 " 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지일에 그 이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.

제 31 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2023 년 06 월 30 일까지로 한다 . 다만 , 년에 체결된 계약은 그 다음해 6 월 30 일까지로 한다 . 단 , 최초 계약 대리점에 한해 2 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.
- ② 계약기간의 만료 , 기타 계약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로 인한 " 대리점 " 의 손해에 대하여 " 회사 " 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에게 이익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.
- ③ 본 계약서에 부가하는 약정서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.

제 32 조 (계약해지에 따른 조치)

- ① 계약기간의 만료 ,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" 대리점 " 은 즉시 " 회사 " 에게 위탁 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 하고 ,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" 회사 " 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가입고객 관련 제반 자료 및 본 계약을 근거로 대여된 물품을 반환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, 미정산된 계산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" 회사 " 에게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.
- ② " 대리점 " 이 제 1 항의 사항을 14 일이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지급일까지 경과된 채무잔액에 대하여 제 9 조 제 3 항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" 회사 " 에게 지급하여야한다 .
-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한 정산 후에도 " 대리점 " 의 미정산 채무가 있는 경우 " 회사 " 는 제공된 담보를 실행 또는 처분하여 미정산 채권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.

제 33 조 (손해배상)

- ① " 대리점 " 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 약정상의 업무수행중 발생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" 회사 "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" 대리점 " 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한 , 책임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.
- ② 제 1 항의 경우 " 회사 " 는 " 대리점 " 에게 지급할 제반 수수료에서 손해 발생액을 상계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실행 또는 처분하여 우선 변제 충당 할 수 있다 .
- ③ 제 30 조 제 1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에 해당금액의 최고 2 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.

제 34 조 (공정거래 동의서 준수)

- ① " 대리점 " 은 " 회사 " 와의 거래개시를 위하여 " 회사 " 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도 제공하지 않으며 , 거래과정에서도 금품제공금지 등 " 회사 " 에 제출한 공정거래동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.
- ② " 대리점 " 은 공정거래동의서를 위반한 경우 , " 회사 " 와 체결한 모든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, 이로 인하여 " 회사 " 의 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.

제 35 조 (해석)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

제 36 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" 회사 " 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" 대리점 " 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.

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증거로서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" 회사 " 와 " 대리점 " 이 기명날인 후 각 1 통씩보관한다 .

2022 년 07 월 01 일

" 회사 "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

SK 텔레콤 주식회사

대표이사 유영상 (인)



“ 대리점 ”

주소 : (07217)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, E동 1층 110호(당산동4가,당산SKV1CENTER)

상호 : 동성텔레콤주식회사

성명 : 심재요 (인)

전자서명 일시 : 2022.06.22 12:00:37